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기준(가정용)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
(안 별표 3)
- 나.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 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15조)
- 다. 기숙사의 가구분할조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(안 제3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실, 기획예산담당관실,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, 하수과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,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[별표 1]의 시설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.

제32조제2항 본문 중 “세대 구성”을 “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세대구성”으로, “기숙사등의”를 “기숙사 등의”로, “산정 한다”를 “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,제15조”를 “단, 제15조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8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)”로 한다.

별표 3 중 가정용의 구분내역란에 “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가정용의 구분내역란에 “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”를 신설한다.

제3조(적용례) 제30조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
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시설 분담금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시설 분담금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,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[별표 1]의 시설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.</u>
제32조(사용량의 인정) ① (생략) ② <u>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등의 적용</u> 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<u>산정 한다. 단, 제15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	제32조(사용량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세대구성-- 기숙사 등의 -----</u> <u>----- 산정한다. 단, 제15조</u> <u>-----</u> <u>---</u> 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	제41조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

원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8.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

② (생략)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----- 경우(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)

② (현행과 같음)

■ 참고자료

▪ 별표3 업종별구분표

현행		개정안	
【별표3】 업종별구분표 (조례 제30조 관련)		【별표3】 업종별구분표 (조례 제30조 관련)	
업종별	구분내역	업종별	구분내역
가정용	-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-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-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(노인)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- 신문보급소, 지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-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·경비실·공동화장실·노인정·운동시설(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)등에 대한 급수 <후단신설>	가정용	-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-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-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(노인)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- 신문보급소, 지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-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·경비실·공동화장실·노인정·운동시설(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)등에 대한 급수 • <u>주거용오피스텔, 기숙사</u>
일반용	(생략)	일반용	(현행과 같음)
욕탕용	(생략)	욕탕용	(현행과 같음)
전용공업용	(생략)	전용공업용	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수도법」

제38조(공급규정)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(생략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(생략)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22조(요금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,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
- ③ (생략)
- ④ (생략)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부과함에 따른 세입감소(조례안 별표3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주거형 오피스텔 80개소 2,000호 및 기숙사 150개소 3,000호에 대한 업종변경에 따른 감소액을 추계한다.

나.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업종 변경하여 수도요금 부과시 5년간 주거형 오피스텔 7억원, 기숙사 10억 5천 5백만원 합계 17억 5천 5백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.

[표1] 연도별 세입 감소액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합 계	△ 351	△ 351	△ 351	△ 351	△ 351	△ 1,755
주거형 오피스텔	△ 140	△ 140	△ 140	△ 140	△ 140	△ 700
기숙사	△ 211	△ 211	△ 211	△ 211	△ 211	△ 1,055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					
민 간						
기 타	450	-	-	-	-	450
합 계	450	-	-	-	-	450

5. 부대의견

주거형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공평한 요금부과에 기여하며, 사용료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비용 일부가 충당 될 것으로 기대됨

6. 작성자 : 업무과 이상두. HP 010-9717-3890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입 감소 내역 (일반용→가정용 변경시)

- 1개소당 20호 월 300톤 사용시

- 일반용 부과시 : 353,000원/1월, 17,650원/1호

- 가정용 부과시 : 236,000원/1월, 11,800원/1호

⇒ 요금 감소액 : 5,850원(호/월) * 5,000호 * 12월 = 351,000,000원

2. 시설분담금 수입 내역

- 부과기준 : 업종 변경시 1호당 동지역 100,000원, 읍·면지역 80,000원

- 동 지역 : 100,000원(1호) * 2,500호 = 250,000,000원

- 읍·면지역 : 80,000원(1호) * 2,500호 = 200,000,000원

⇒ 합 계 : 250,000,000원(동지역) + 200,000,000원(읍·면지역) = 450,000,000원

소관 실 · 과		업 무 과
입 안 자	과 장	확 인 태
	담 당	나 동 식
	담 당 자	이 상 두 (480-4432)